

제 882 호

1981.12.3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면 집 : 공 보 관 이 층 우

전 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25-6090

# 시 보

## 차 레

### ◎ 조 해

제 1572 호 :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	3
제 1573 호 :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중개정조례	4
제 1574 호 :	서울특별시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 중개정조례	4
제 1575 호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조례	5
제 1576 호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조례	6
제 1577 호 :	서울특별시 남산야외음악당설치조례 폐지조례	8
제 1578 호 :	서울특별시 시립남산야외음악당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8
제 1579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조례 폐지조례	8
제 1580 호 :	서울특별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위원회조례 폐지조례	8
제 1581 호 :	서울특별시 혼분식 실천강화협의회조례 폐지조례	9
제 1582 호 :	서울특별시 관광휴게소설치조례 폐지조례	9
제 1583 호 :	서울특별시 세조례 중개정조례	9

<이면제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1584 호 :	서울특별시원호대상자의주택및농지취득에대한시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10
제 1585 호 :	서울특별시세입장수포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	11
제 1586 호 :	서울특별시산업체부설학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	11
제 1587 호 :	서울특별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	11
제 1588 호 :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증 개정조례	12
제 1589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증 개정조례	12
제 1590 호 :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조례증개정조례	13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2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성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여 새마을지도자(구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자녀로서 다음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경력 1년이상 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는 현직 부부새마을지도자 또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중 새마을사업시행중 품성상을 입은자

2.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 기재학년 정원의 100분지 5)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구, 예능에 소질과 예능이 뛰어난 자

②제 1호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 4조, 제 5조 및 제 9조제 2항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당 새마을지도자수의 3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경위에서 정한다.

## 칙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아천수리자부담금징수조례중 1경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13-4 제 882 호 시

보 1981.12.31.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3 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  
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 조증 "30일"을 "10일"로  
한다.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부담  
금에 관한 토지등의 가액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부  
담금 부과대상구역을 관할하는 구  
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과대  
상구역이 2개이상의 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  
조례증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4호

서울특별시유기장영업허가  
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유기장영업허가수수  
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액

종 별	신 규 허가 및 소재지 변경 허가 수수료액	허가사항변경허가수수료액 (소재지변경허가제외)
당구장, 배이비풀프장, 셔플보오드장, 투환장, 회전비행, 어린이증마장, 모형차유기장, 회전의자, 실내사격장, 전자유기	5,000 원	2,000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882 호 시

보 1981. 12. 31 13-5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575 호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축량법 제 35 조의 4,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종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무국 문화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종 5인이상 7인이내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적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진사는 내무국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행정과 행정제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내 일원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 5 조 (지명의 조사) ①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서울특별시내 일원의 부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병칭 오류(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도 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3-6 제 882 호 시

보 1981.12.31

<p>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중앙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p> <p>제 6 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p> <p>제 7 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8 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회의 일시 및 장소</li><li>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li><li>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li><li>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li><li>5. 기타 중요한 사항</li></ol> <p>제 9 조 (시정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p>	<p>예산편성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p> <p>◎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p>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6 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심의, 확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예산편성 지침) 국무총리는 매전년도 8월 30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p> <p>제 3 조 (예산안의 편성) ① 서울특별시 본청 각국장,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매전년도 9월 30일까지 소관별 요구예산안을 예산편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제 882 호 시 보 1981.12.31 13-7

②시장은 일반회계, 특별계의 세입, 세출예산, 재수비, 명시 이월비 및 체부부담행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다.

특히,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관련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년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2. 사업별 우선 순위 체정

제 4 조 (예산안 제출등) ①시장은 제 3 조에 의한 예산안을 매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예산심의) ①국무총리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심의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 1 항의 예산심의 자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6 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승인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 예산승인 이전 까지의 예산집행을 사후 승인된 것으로 본다.

1. 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조례에 의한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제승

제 7 조 (시행규칙) 이 조에 시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남산 야외음악당설치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13-8 제 882 호

시

보 1981.12.31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7 호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남산야외음악당설치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남산야외음악당 설치조  
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남산야외음악당 사용료징수조례폐지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8 호

서울특별시립남산야외음악당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

서울특별시립 야외음악당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9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대간첩작전 원호대책위원회조례폐  
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0 호

서울특별시 대간첩작전 원호대책  
위원회 조례폐지 조례

서울특별시 대간첩작전 원호대책위  
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 882 호 시

보 1981.12.31 13-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Hon·Fun City Seocho-gu, Seoul Special City  
Gyeonggi-do, Korea, December 31, 1981  
시장은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2 호

서울특별시 혼·분식 실천강화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서울특별시 혼·분식 실천강화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관광휴게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2 호

서울특별시 관광휴게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휴게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3 호

서울특별시 세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4조 중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을  
“자동차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 7조 제 1항 중 “각구(출장소)에  
구(출장소) 시세심의위원회”를  
“각구에 구시시세심의위원회”로  
한다.

13-10 제 882 호 시

보 1981.12.31

제 7 조 제 5 항 중 “제 1 부시장”을 “부시장”으로, “세무국장”을 “세무국장”으로 “시의 세무행정과장, 과장과장, 세무조사과장 및 지적과장”을 “시의 세정과장, 세무지도과장, 재정기획과장 및 지적과장”으로, “총무국장(출장소장)”을 “재무국장”으로, “구의 세무 1과장, 세무 2과장” 및 “출장소의 세무과장”을 “구의 세무 1과장, 세무 2과장”으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본문 중 “구청장(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 1 호 가록 중 “3급율류 이상의 공무원과 시행정자문위원”을 “5급이상의 공무원과 시정책자문위원”으로 하며 제 2 호 가록 중 “3급율류 이상의 공무원과 구행정자문위원”을 “5급이상의 공무원과 구정자문위원”으로 한다.

제 7 조 제 12 항 중 “구(출장소)”을 “구”로 한다.

제 7 조 제 17 항 중 “구청장(출장소장)”을 “구청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 10627 호 (198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파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584 호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파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파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중 “구청장,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 4 조 제 1 항 중 “구청장,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 2 항 중 “구청장,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입장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제 882 호

시

보 1981. 2. 31 13-11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5 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그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단서 중 "세무행정과장" 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 5 조 중 "구, 출장소" 를 "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 10627 호  
(198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  
일로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시세과세 면  
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6 호

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

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중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구령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  
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7 호

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중 "관할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13-12 제 882호 시 보 1981.12.31  
부 칙 에 공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1년 12월 31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파세 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9호 한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파세 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 서울특별시조례제 1588호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파세 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파세 면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중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파세 면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제 1호 가목 중 “구청장(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 3조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 중 “구청장(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풍유재산심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파세 면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

제 882 호 시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1590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  
인과 위원 약간정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판재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전과장, 도시계획부장,

보 1981.12.31 13-12

구획정리과장, 건설행정과장, 주택기  
획과장, 주택개량과장, 업무과장, 지  
수과장이 된다.

제 4 조 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  
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록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 10027 호  
(198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3  
정기구제 한한 규정 제 1590 호로  
로부터 적용한다.